

『인권연구』 9(1): 35-67.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35-6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35>

[일반논문]

## 성폭력 판단의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

### 남성 간 성폭력 판결문 분석\*

신 승 호\*\*

---

한글초록

이 연구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 간 성폭력에 나타난 법원의 성폭력 이해를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과 유사하게 ‘음란성’이 피해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경향은 유사했다. 둘째,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는 여성의 피해와 비교해 위력의 인정과 무고 의심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법원의 성폭력 판단은 이성 간의 성적 결합만이 자연스럽다는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동성애자일 때는 성폭력을 과잉 성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성 간 성폭력 피해의 해석과 인정에 나타난 법원의 이러한 관점은 남성애에 의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와 비교할 때, 이성애 및 남성중심적인 현행 젠더 관계의 모순을 보여준다.

주제어: 남성 간 성폭력, 판결문 분석, 음란성, 피해자다움, 동성애

---

---

\* 이 논문은 2025년 서울대학교 학생자율교육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연구임. 이 글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사회학자가 주최한 <2025 사회학주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귀중한 논평을 주신 토론자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과정, [seungho.qct@gmail.com](mailto:seungho.qct@gmail.com)

목 차

- I. 서론
- II. 연구 방법 및 자료
- III. 피해자로서 남성: 음란성에 근거한 성폭력 판단
- IV. ‘남성 동성 간’이라는 관계적 특성: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
- V. 동성애라는 예외
- VI. 나가며

## I. 서론

### 1. 문제 제기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정부는 성차별 완화와 동등한 권리 및 기회 보장의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하기에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선정하였음을 덧붙였다(연합뉴스, 2025.9.30.). 이런 기초 아래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의 ‘역차별’ 경험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한겨레, 2025.10.14.). 여성에서 성평등으로의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년층의 이른바 ‘젠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언설을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듯한 중립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남성의 ‘역차별’을 다루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정부의 기초가 여전히 ‘젠더 갈등’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젠더 중립을 표방하면서 여성의 차별 경험과 남성의 ‘역차별’ 경험을 동등하게 다루게 될 때, 젠더화된 경험이 만들어지는 구조, 문제화 과정, 효과 등의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모두 지운 채 표면에 드러나는 피해자성에만 주목하게 된다. 이때 차별을 만드는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식별하기 어렵기에, 젠더 중립을 표방할수록 오히려 젠더 불평등한 결과가 도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Boyle, 2019).

‘여성폭력’이라는 명명은 아내구타, 성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과 같이 여성들이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고, 동의한 행위와 동의하지 않은 폭력 중 어느 한 곳에 위치시킬 수 없는 경험을 공론화하면서 등장했다.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했던 것도 아니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자체가 남성에게 ‘역차별’이라는 백래시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형성되었다. 예컨대 2018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통과되었을 때, 남성 피해자에게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남성 집단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한다면 자신들을 역차별의 피해자로 위치시켰다(파이낸셜뉴스, 2018.12.6.). 이와 더불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모든 것은 능력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능력주의와 결합된 안티페미니즘 정서(김보명, 2019) 그리고 청년 남성의 ‘역차별’ 소구가 기성 남성 정치와 만난 결과, 제도적 차원에서 젠더 관점이 누락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페미니즘을 무화하며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안티페미니즘 집단의 언설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이 경험하는 피해를 다루는 것이다. 즉, 성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 피해의 발생 구조부터 효과에 이르기까지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Chesney-Lind, 2006). 남성의 성폭력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피해 의미구성과 효과 전반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 페미니즘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에서,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판결문을 통해 남성 간 성폭력<sup>1)</sup>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1) 황정임 외(2022)에 따르면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있어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7.9%)보다 남성인 경우(46.4%)가 더 많았기에 본 연구는 남성 간 성폭력에 주목하였다.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페미니즘이 주목해 왔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 논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남성 간 성폭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남성 피해자라는 특성(Ⅲ장), 이성이 아닌 남성 동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관계적 특성(Ⅳ장), 특히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남성’ 집단 내부의 상이한 위치들(Ⅴ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자원

### (1) 남성의 성폭력 피해와 젠더

성폭력(sexual violence)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범주로,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Cahill, 2009).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조됨에 따라 성폭력의 초점이 섹슈얼리티, 즉 ‘성적인 것’의 문제로 옮겨갔으나(신상숙, 2008), 성폭력의 ‘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섹슈얼리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성차별 등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추지현, 2013). ‘성폭력’이라는 범주가 통상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폭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라는 명명은 권력관계로서의 젠더에 (다시) 주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은 폭력의 발생이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기인하고, 폭력의 효과로서 젠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폭력을 어떻게 명명하든, 이름을 붙이는 작업만으로는 폭력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Boyle, 2019). 이 연구가 주목하는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남성성<sup>2)</sup>의 문제와 남

---

2) 남성성은 흔히 ‘생물학적 남성’에 본질적으로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속성이나 ‘남자다움’의 동의어로서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고는 하는데, 코넬(2013)은 이러한 설명들과 거리를 두며 관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한다. 즉, 남성성은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그 장소에서 남녀가 관여하

성 성소수자의 취약한 사회 자본에 주목해 왔다.

첫째, 그간 페미니즘은 남성 간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남성 동성 사회에서 특권화되는 남성성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교도소나 군대에서 남성성‘들’ 사이의 위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브라운밀러, 2018; 버크, 2023).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권인숙 외, 2004; 이미정·정수연·권인숙, 2016; 서동광·하정희, 2020 등)<sup>3)</sup>. 반대로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지 않고 내면화하는 이유로는 남성성의 손상을 든다(권인숙 외, 2004). 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경험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고발을 꺼려하고(이미정·정수연·양혜린, 2017),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도 피해 인지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고발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서유정, 2023).

한편, 군대와 같이 지배적인 남성성을 구축하는 남성동성사회에서 이성애 바깥의 섹슈얼리티가 배제하기도 한다. 이성애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남성동성사회에서 남성 간 연대와 남성 동성애의 경계는 모호한데, 이때 남성 동성애는 남성 간의 연대를 해체하고 지배적인 젠더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Sedgwick, 1985). 그런데 동성애는 남성성을 특권화시킨 남성동성사회의 불가피한 결과로 등장하기에(김학이, 2013),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공포, 억압, 비가시화가 나타난다. 예컨대 균형법상 추행죄는 이성 간의 성적 결합을 자연화하고 성폭력을 남성 성욕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지배 질서를 재생산한다(추지현, 2013). 징병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남성은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과잉성애화되는 동성애자 군인은 그 ‘고통받는 남성’을 언제든지 위험에 빠뜨릴

---

는 실천이고, 그런 실천이 육체적 경험, 인격, 문화에서 만들어 내는 효과”(116)이다. 젠더 관계 속의 실천이자 효과로서 남성성‘들’은 상호연결된 복수적 형태를 띤다.

3) 군대 내 성폭력 연구에 비해서 수는 드물지만,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 역시 존재한다(오봉욱, 2014).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추지현, 2024).

둘째, 남성 성소수자가 동성으로부터 경험하는 성폭력은 주로 이성애규범성의 틀로 설명되었다<sup>4)</sup>. 대표적으로 섹슈얼리티의 ‘교정’을 위해 행해지는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이성애를 자연화하는 질서의 실천이다(버크, 2023). 한편 퀴어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담론, 즉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담론과 전통적인 이성애 규범에서의 탈피를 해방으로 의미화하는 담론이 맞물릴 때 퀴어는 과잉성애화된 주체로 표상된다(Gaspar et al., 2021). 이 설명에 따르면 남성 성소수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해석의 과정에서 ‘성욕과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상성욕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페미니스트가 비판했듯, 성폭력의 발생 요인을 개인의 성욕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회를 지우고,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게 된다. 이들 논의는 남성 간 성폭력 판단에 있어 가해자 개인과 동성애자의 성욕 과잉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삼고,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병리화하며, 남성중심적 규범을 강화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남성 성소수자의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성소수자라는 위치가 만들어 내는 고유한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이어져 왔다. 성폭력을 발생 가능하게 만드는 유인으로는 포괄적 성교육, 성중립 화장실, 폭력 예방 정책의 부재가 지목되었고(Blackburn et al., 2024),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 및 메커니즘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혐오, 이성애중심주의, 아웃팅 협박 등이 보고된 바 있다(New York City Gay & Lesbian Anti-Violence Project, 2003). 성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공동체 내 공론화를 선택하기도 한다(김효정 외, 2023). 반대로 성소수자 사이

---

4)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은 이성애 섹슈얼리티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특권화하는 규범을 말한다(Marchia and Sommer, 2019).

에서 나타나는 모든 폭력을 성소수자라는 맥락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병원과 컴퓨터를 비롯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기도 한다(Soares et al., 2023). 레즈비언 관계 안팎에서의 성폭력에서는 성기 삽입을 동반해야 강간이라 여기는 통념(Ovesen and Carroll, 2025)이나 여성/페미니스트 집단이 안전하다는 통념(송승연, 2025)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거나 피해의 인지 및 대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남성 간 성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남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기보다, 내부의 상이한 위치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이성애 성인 남성,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아동·청소년 남성, 과잉성애화되는 성소수자 남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부터 이해 방식, 이후의 효과까지 차이를 보일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젠더가 섹슈얼리티, 연령 등과 교차할 때 성폭력‘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를 만드는 기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성폭력 판단 기준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표적으로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 그리고 음란성이 이성애 규범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억압의 효과이자 억압을 영속시키는 기제로 이성애를 지목했다. 예컨대 리치(Rich, 1980)는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 개념을 통해 이성애 역시 문화적 구성물이며 가부장제의 억압을 통해 이성애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이성애를 보편적인 성적 지향으로 전제하는 것은 곧 여성 억압과 가부장제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동시에 통제한다(Marchia and Sommer, 2019).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정조’ 관념 아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된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여온 성폭력 판단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sup>5)</sup>을 경험하였는지이다. 이는 정조 개념을 전제로 한 과거의 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산물로서, 오늘날에도 보호받을 만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나누는 기준으로 평가된다(장다혜, 2018). 균형법상 추행죄에서도 이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개인적 법익과 성풍속과 균기를 유지한다는 사회적 법익이 법리상 혼재되어 있다. 이때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혹은 사회의 도덕 질서를 침해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며, 정조 중심의 법 해석을 강화시킬 수 있다(장다혜, 2018).

또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 판단이 음란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사용되는 판단 기준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유발하는지’는 대법원이 정의한 음란과 유사하다(김소라, 2018). 따라서 음란성은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건전한 성풍속’과 ‘보통인의 정서’에 기반하므로 자의적이고 시대별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지극히 도덕적인 기준이다. 이때 성적 표현에 대한 도덕주의적, 남성중심적 규범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김소라, 2018). 음란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판단은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한계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컨대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의 핵심은 촬영물이 성적 통제, 조종, 협박의 수단으로 쓰이는지에 있으나, 이 과정이 반드시 ‘성적인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김애라, 2022). 요컨대 음란성을 성폭력 판단의 준거로 삼고 이에 기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적인 신체 부위’로 환원하면서 피해를 축소시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김애라,

5)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였으나, 판례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022).

성적 수치심 이외에도 페미니스트들이 문제화해 온 것은 여성의 성/폭력 경험을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 속에 위치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Kelly, 1987). 여성의 경험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환원할 때는 여성들 경험의 다양성을 지우고 폭력 피해가 필연적이라고 이해하기 쉽고, 자발성으로 환원할 때는 복합적인 젠더 권력 구조를 지우면서 책임을 개인화하게 된다. 자발성과 비자발성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서사는 여성의 구체적인 위치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복잡한 경험들을 담아내기 어렵다(Maher, 1997). 한국의 경우 2019년에 들어 ‘성인지 감수성’을 성폭력 판단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최협의설<sup>6)</sup>이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다움이 요구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인과론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이 전형에서 벗어나는 피해 경험을 누락시킨다(김선희, 2019; 허민숙, 2017).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취약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정치적 행위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Park, 2024). 피해자 관점이 누락된 법원의 판단에서는 피해자다움의 기준 역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

---

6) 현행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들고 있다. 최협의설은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견해로, 이에 따르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대법원, 2023).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의 이 판결은 강간이 아닌 추행의 해석에 한하여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대법원의 강제추행죄 최협의설 폐기 판결 이후 유사강간과 강간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하급심에서는 이 최협의설 폐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여럿 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확정된 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988 판결) 역시 존재한다(안지희, 2026).

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과 비자발적인 ‘성매매피해자’로 나뉜다. 그러나 자발과 비자발의 이분법 아래에서 피해자성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성적 이중 규범과 낙인을 만들어 낸다(이지현·박설희, 2025).

그런데 남성 간 성폭력 피해는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반대로 각각의 경험을 완전히 분리시켜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두 피해에 대한 법적 해석의 관점에 전제된 인식소들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때 젠더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 기대어 음란성과 피해자다움을 중심으로 법원이 남성 간 성폭력을 어떻게 해석, 이해,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 II. 연구 방법 및 자료

일반적으로 법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여겨지지만, 페미니스트 법학은 법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폭로해왔다. 이때 페미니스트 법학의 책무는 누락되는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법과 사법 체계 속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여 ‘새로운 객관성’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양현아, 2005).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법원이 남성 간 성폭력을 이해하는 데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법원이 남성 간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판결문을 분석했다. 해당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이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이 강제추행 죄혐의설을 폐기한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동성’, ‘동성애’, ‘동성애자’, ‘성소수자’,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본문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형법」, 「군형법」, 「성폭력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판결문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별이 모두 남성으로 명시된 경우다. 최근 1년간의 해당 판결문을 우선 분석했을 때, 대다수가 강제추행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었고, 강제추행 죄협의를 폐기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석 변경이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분석 기간을 위와 같이 확대하였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간 성폭력은 성소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교집합을 이루므로, 판결문 수집에 있어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관련 주제어들을 검색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해당 기간에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다른 심급의 판결문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풍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에 선고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집한 전체 사건 중에서 쟁점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24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사건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사례 14>와 <사례 24>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위의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례 14>의 경우 피고인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으나,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 남성에게 가한 성폭력이 범죄 전력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사례 24>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진행된 재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동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한 행위임이 적시되었기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판결문 정보

연번	선고일 (1심 기준)	사건번호 (1심 기준)	죄명	판결 형태	피고인-피해자 관계
1	2023. 4. 20.	수원지법 2022고합730	1 (2심에서 인정된 죄명 폭행)	무죄 → 벌금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2	2023. 5. 17.	서울서부지법 2022고단2684	강제추행	벌금 → 선고유예	직장 동료

46 인권연구 제9권 제1호(2026. 6.)

연번	선고일 (1심 기준)	사건번호 (1심 기준)	죄명	판결 형태	피고인-피해자 관계
3	2023. 8. 8.	대구 서부지원 2023고정8	강제추행	벌금	직장 동료
4	2023. 9. 7.	서울동부지법 2023고합29	유사강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징역	-
5	2023. 10. 11.	수원 안산지원 2023고단1034	강제추행	무죄	-
6	2023. 10. 18.	서울남부지법 2022고정1221	2	무죄	게임 운영자- 커뮤니티 회원
7	2023. 11. 30.	대구지법 2023고단3042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회복무요원- 관리자
8	2024. 1. 11.	대구 서부지원 2023고합46	1, 4	무죄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9	2024. 1. 23.	서울북부지법 2023고합133	유사강간, 상해, 강요	무죄	동성애자 커뮤니티 지인
10	2024. 4. 18.	인천지법 2023고합550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군대 선임-후임
11	2024. 4. 19.	인천지법 2023고합557	5	무죄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12	2024. 5. 21.	서울북부지법 2023고합479	1, 4	무죄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13	2024. 6. 20.	창원지법 2024고합149	1, 5, 출입국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14	2024. 7. 9.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320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징역	일면식 없는 성인-성인
15	2024. 7. 23.	대전 홍성지원 2024고합13	미성년자의제유사 강간, 4	집행유예	동성애자 커뮤니티 지인
16	2024. 9. 27.	인천지법 2023고합895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징역	군대 선임-후임
17	2024. 10. 17.	전주지법 2023고정593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교도소에서 같은 방 사용
18	2024. 11. 22.	대전지법 2024고단1619	강제추행	벌금	회사 사장-직원
19	2024. 11. 26.	대구 포항지원 2024고합76	1	무죄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20	2024. 11. 28.	춘천지법 2024고합56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집행유예	군대 선임-후임

연번	선고일 (1심 기준)	사건번호 (1심 기준)	죄명	판결 형태	피고인-피해자 관계
21	2025. 1. 23.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1251	1, 4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22	2025. 4. 23.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1336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5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성인-아동
23	2025. 6. 20.	광주지법 2024고합679	3, 노인복지법위반	징역	병원 간병인-환자
24	2025. 8. 21.	서울동부지법 2025고단1775	공연음란	징역	-

주: 판결문에서 피고인-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죄명 표기에 사용된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III. 피해자로서 남성: 음란성에 근거한 성폭력 판단

#### 1. ‘성적인’ 신체 부위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강제추행 피해 판단의 주요한 기준은, 쟁점이 되는 신체 부위가 일반인의 정서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이다. 이는 남성 간 성폭력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례 3>은 아르바이트 교대근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허리를 숙이고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엉덩이 안쪽 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엉덩이 안쪽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동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사례 20>에서도 선임이 후임의 가슴 내지 광배근 부위를 만진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이는 행위 주체가 동성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

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례 22>의 경우, 법원에 따르면 고령의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훈계 목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다가 성기를 잡아 비틀었는데, 법원은 이 신체 부위를 두고 피해 아동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성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11>, <사례 13>, <사례 21>은 모두 개방된 장소, 밝은 대낮에 서로 일면식 없는 성인과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추행 인정 여부는 갈리고 있었다. <사례 21>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에 엄마와 함께 서 있던 7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콧불을 쓰다듬어 만졌다. 법원은 콧속과 콧불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뺨과 머리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민감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나누었다<sup>7)</sup>. 그런데 <사례 13>의 경우,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10세의 남자 아동과 악수를 하고 갑자기 양쪽 볼을 꼬집었다는 사실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원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수 있어도, 어린 남자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볼이라는 부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는 연령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맥락이 대동소이하지만, 성폭력 인정 여부는 갈리고 있다. ‘성적인’ 신체 부위를 판단하는

7) <사례 21>에서는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고통을 지속해서 호소했음을 피해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이 점 역시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중 <사례 21>과 맥락이 대동소이한 경우, 부적절한 접촉은 맞지만 성적이지는 않다는 논리와 함께 피해 아동의 왜곡된 기억, 과장된 진술과 감정의 가능성을 들며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았다(사례 1, 11, 12, 13, 19). 이는 현행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성적 권리, 신빙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질문을 남긴다.

음란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성폭력 판단에서 이 기준을 고수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62세 남성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있는 9세 남성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1회 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 11>의 경우, 법원은 팔 부위를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는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친근감 표시를 넘어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례에서도 추행 판단에 신체 부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사건 당시 탈의 여부, 착용하고 있는 옷의 종류 역시 판단의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착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에 대해 성적인 추행을 한다는 인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은 음란성을 근거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 사례를 종합할 때, 특히 법원의 판단이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란성에 기반하여 쟁점이 되는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감각할 수 있는 부위인지 따지는 것은 다소 모호하다. 나아가 ‘성적인’ 신체 부위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남성 간 성폭력을 이해, 해석하는 데 있어 음란성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 발생의 젠더화된 맥락보다는 성도덕을 규율하는 데 그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장다혜, 2018).

## 2. 성적 수치심의 구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지금의 성폭력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비판이다(장다혜, 2018). 기존의 비판에 더하여, 여기서는 성폭력 피해를 둘러

싸고 혼재하는 감각들 사이의 모호한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음란성’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살펴본다.

<사례 10>은 같은 중대에 소속된 군대 선후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황실에서 선임이 후임의 팔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허벅지 부위를 만진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것이다. 법원은 팔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은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sup>8)</sup>.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 용인되는 사이였고, 이 행위 역시 장난이었으며, 조금 불쾌했을 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을 감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다툼으로 인한 불쾌감의 영향을 받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감각에 대한 피해자의 해석이 달라졌음에도 그 해석과 진술이 달라진 요인, 즉 폐쇄성과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군대의 특성이나 피고인, 행정관, 부대 분위기 등의 맥락이 검토되지 않았다.

한편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 없이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다음을 살펴볼 수 있다. 62세 남성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있는 9세 남성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 11>의 피해자는 조금 당황스럽고 무섭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에 대해 불쾌함과 무서움을 느꼈으나 이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사례 12>에서 피

8)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모두 소거한 채, 신체 부위에만 집중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마트 앞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키보드를 빼앗아 뒀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라기보다 어른인 피고인의 위압적인 언동으로 인해 느낀 불쾌감과 두려움, 특히 자신이 피해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키보드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양쪽 볼을 꼬집은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 13> 역시 피고인이 볼을 꼬집은 이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통증을 느껴 온 것으로 보일 뿐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세 가지 사례 모두 혐오감과 각 사건의 피해자가 느낀 감각이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인 성적 수치심, 모멸감, 혐오감에 어떻게 들어맞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고, 피해 아동의 관점이라기보다 성인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수치심과 모멸감뿐만이 아니라 불쾌감, 공포감, 두려움 등의 여러 감각이 판결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후자는 ‘성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이해되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주장한 사례는 물론, 이를 주장하지 않은 아동의 사례에서도 일반적, 통상적,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IV. ‘남성 동성 간’이라는 관계적 특성: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

##### 1. 위력의 인정

현행 성폭력의 구성 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 이외에도 위력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sup>9)</sup>. 여기서는 남성 간 성폭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위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사례 17>에서는 교

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인정된 사실에 따를 때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이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하는 등 혐악하게 대했고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할 때도 있었다.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고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도 반항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는 위력이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역시 인정되었다. 앞서 다루었던 <사례 20>의 피고인은 자신의 군대 후임인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팔, 가슴, 등, 양쪽 광배근을 주물러 만졌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팔뚝을 만져보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 외 몸을 만지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하급자로서 일방적인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라도 상급자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동의했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윤지영, 2020).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 10>에서는 대대 상황실에서 팔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피고인(선임)을 피해자(후임)가 밀쳐 내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이 운동을 하는 사이였고, 서로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9)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기 때문에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윤지영, 2020). 한편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 폐기 이후,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하게 보자면 둘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성폭력 사례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언행이 있었음에도 서로 신체접촉을 용인해 온 사이라는 점에서 위 행위가 장난으로 판단되었고,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위의 세 사례는 피해자 비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폭력 통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에 있어 작동하는 피해자 통념 중 하나는 피해자의 ‘유혹’으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김보화·추지현·이미경, 2017). 그러나 동성 간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성애자라는 사실이 의심되지 않을 때 이 통념의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례 10>에서 작동한 피해자 통념은 ‘평소 신체접촉을 하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기 어렵다’에 가깝다.

동성 간 신체접촉의 허용을 두고 피해를 부정하는 사례는 비이성애적 관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례 9>의 피고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SM 플레이를 하기로 하고, 가학적 접촉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에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가학 행위를 가하여 유사강간, 상해, 강요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SM 플레이 이후 피고인을 기다린 이유로 SM 플레이가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하여 그 삭제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가학적 접촉에 관하여 협의하는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촬영은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원은 촬영이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하였다.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4시간 이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강제로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였을지도 의심을 표하며 이를 피해자의 처음 경험해본 SM 플레이에 대한 혼란스러움,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걱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봉합되었다. 이 사건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는데, 2심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

의된 SM 플레이를 했고, 이후에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쌍방 의사 합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상처가 당초 혐의된 SM 플레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위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임을 들며 쌍방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SM 플레이에 대한 동의를 이유로 이후 거부 의사를 만연히 부정하는 것은 마치 성매매 여성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폭력 피해는 불가능하다는 프레임(김보화·추지현·이미경, 2017)과도 유사해 보인다.

## 2. 무고 의심의 부재

추행 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사례 17), “행위 주체가 동성이라고 하여 달리 불 이유가 없다”(사례 20)와 같은 표현이 <사례 2>를 제외하고 모두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성 간 성폭력의 판결문에서 ‘이성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견주어 보면 이성애중심주의는 여전히 강력하다.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가 남성 간 성폭력 판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주목할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에서 피해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되는 ‘피해자다움’의 부재나 무고 혐의에 대한 검토가 남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례 3>의 2심에서는 피고 측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이틀 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 제기 이전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릴 수 있고, 이때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며 이를 기각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직장에서 벌어진 남성 대 남성 사이의 추행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다루는 <사례 18> 역시 유사하다. 피고

인인 사장은 “주말에 일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웅 궁둥이 터치하셔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소 가벼운 태도로 추행 피해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경험하고 열 달가량이 지난 후 퇴사하고, 퇴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동성 간 추행이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뒤늦게 고소했다고 진술하는데 법원은 이 지점 역시 충분히 수긍했다. 피해자다움을 둘러싼 기존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벼운 태도로 추행을 언급한 것, 고소 시기가 늦은 것 모두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른바 ‘진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곤 한다(허민숙, 2016; 2017). 그러나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발과 피해 발화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이 중첩되어 나타난 <사례 16>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서 군대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경험한 피해자는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에게는 깍듯하게 대한 반면 후임병들에게는 폭행, 사적 심부름 시키기 등 부대 내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빈번히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군대 내 부조리’ 가해 행위는,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면 후임병들 사이에서는 물론 선임병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악화될 수 있고 자신도 후임병들로부터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행위로 해석되며 무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기각하는 데 활용되었다. 동시에 선임병을 신고하는 행위는 기수열외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들며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평소에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군대 내 부조리를 당한 증인의 진술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판결문을 통해서도 기존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작동해 온 피해자다움의 전형이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요구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 간 성폭력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통념은 ‘평소 신체접촉을 하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기 어렵다’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성애를 자연화하는 판단 체계 아래에서 동성애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남성 행위자들 사이에는 ‘성적 욕망’이 성립될 수 없고 그 결과 성폭력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반영한다. 이는 한편으로 피해자다움이 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는,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 내는 통념과 편견에 의해 구축되는 신화라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김진희, 2019). 이 기저에는 성폭력을 성욕의 문제라고 보는 것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사회성의 불분명한 경계를 이성애/동성애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려는,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의 맞물림(Rich, 1980)이 자리하고 있다.

## V. 동성애라는 예외

###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사례 2>는 직장 동료가 엉덩이를 손으로 세계 때리거나 툭 치고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추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되었는데,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동성 간 추행에 관한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음 등을 참작했다. 사회복지무요원인 피해자와 그 관리자인 피고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인 <사례 7><sup>10)</sup>에서도 같은 사유가 참작되었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때 인식의 간

10) 근무지의 계단에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이다.

극이란, 이성 간의 성적 결합을 자연화하면서 남성 상호 간에 서로가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차이로, 법원은 전자의 보편성을 근거로 남성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였다.

한편 <사례 7>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은 판시 범행의 성립과 무관한 요소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여기에 따르면 적어도 성적 지향과 성폭력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례로 <사례 5>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 5>는 남자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으로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형사처벌전력도 없으므로 범행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한다.

남성 간 성폭력 판결에 있어 성적 지향이 범행의 동기나 의도로 위치 지어지고, 이때 범행 동기의 부재, 즉 ‘피고인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요소가 법원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판결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피해사실과 관련된 가학적, 변태적 성향을 드러내는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사례 8), 동성애 성향 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사례 1, 11, 12),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사례 13),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사례 19)을 들며 ‘피고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니 범행에 의도가 없고, 따라서 동성 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않았지만, 성적 지향이 판단의 쟁점이 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4>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로 데리고 가 폭행하려고 하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동성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궁금해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진술을 법원은 기각하였다. 법원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양성애적 성향이 있으나 피고인 외에 다른 동성과는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평소 동성에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에 관해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인터넷게임의 운영자가 게임 커뮤니티 회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맥락이 담긴 심한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 6>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동성애의 취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긴 하다. 그러나 성적 욕망 유발이라는 목적의 유무를 평소의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욕망이 실천되는 방식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묻기보다는 이성애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과잉성애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의 발생 요인을 개인의 섹슈얼리티에서 찾는 것은 성폭력을 성욕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성폭력을 발생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을 탈각시킨다. 이때 성폭력은 마치 성욕과 성 충동을 억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 판단에서 피고인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는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자체가 이성애를 자연화하면서 동성애를 구성적 외부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균형법상 추행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추지현, 2013; 2024), 법원의 남성 간 성폭력 판단은

동성애자를 과잉성애화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다.

## 2. 피고인이 동성애자일 때

법원이 피고인을 동성애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역시도 법원의 성폭력 판단이 이성애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3>의 피해자는 81세이고, 피고인은 재활병원에서 피해자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례 공소사실은 재활병원 샤워실에서 고령, 신체장애,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샤워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피해자의 엉덩이 및 사타구니 부위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등 8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점을 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 발현이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근거로 피고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거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시인하였으며 HIV 감염자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과거 동성애자였거나 현재에도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고의로든 망상이든 동성 간 성폭력을 무고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가 동성애자일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주장까지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HIV 감염 사실이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점, 이를 통해 무고 의심을 적극적으로 기각한다는 점에서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사례 24>에서는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 자체에 대한 법원의 회의를 읽을 수 있다. 아파트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두 차례 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동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특이성향을 보이고 있어 교화시설에서의 생활이 피고인 개인의 교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만, 재범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

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은 구금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남성동성사회인 교회사설 내부의 성도덕마저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추행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바에 ‘건전한 성 도덕규범’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장다혜, 2018). 분석한 사례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규율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14>의 공소사실 자체는 이성 간 성폭력이었지만, 동성애자인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작동하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성 간 성폭력의 재범 위험성을 동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환원하는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의 섹슈얼리티를 과잉성애화, 병리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폭력을 성욕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역시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었지만,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회성 만남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자극 추구적 성향 때문에 중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15>의 공소사실은 온라인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2세 남성을 직접 만나 골목길과 교회의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으나, 다른 판례들과 다르게 법원의 판단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다. 법원은 주택가 골목길, 화장실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장소라고 적시하였다. 두 사례 모두 일회성 만남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와 같이 성적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소수자라는 위치에서 구성되는 삶의 맥락은 물론 일탈적이라 여겨지는 성적 실천을 성도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일반

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일회성 만남을 이어가는, 특히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더욱 그럴 수 있는 맥락을 살피기보다 법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제시했다.

## VI. 나가며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성 간 성폭력 판결문에 나타난 성폭력 인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음란성’을 준거로 하여, 성폭력 판단에 있어 성적인 신체 부위와 감각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경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 판단과 유사했다. 이는 피해 발생이 가능했던 과정과 맥락보다 성적인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한계가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남성 간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력의 행사가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무고 의심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제와 동의의 이분법에 기초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가 강고한 후자와 비교할 때, 이것은 성폭력 판단의 남성중심성을 보여준다. 셋째, 법원의 성폭력 판단은 이성 간의 성적 결합만이 자연스럽다는 규범을 반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동성애자일 경우 피해 인정은 물론 재범 위험성이 쉽게 인정되는 사례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페미니스트 법학이 줄곧 비판해 온 법의 남성중심성이 이성애규범성과 서로 교차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남성 간 성폭력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의 맞물림으로서 ‘젠더화된 이성애규범성’이 법의 전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담론적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향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반성폭력 운동과 퀴어 운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교차성에 주목할 때, 이성애규범성 뒤에 또 어떤 지배, 억압 구조가 얽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예컨대 13세 미만 미성

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기억과 진술이 왜곡, 과장되었거나, 부적절한 접촉은 맞지만 성적이지는 않다는 논리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이는 현행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권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남긴다.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판결문은 상당히 좁은 기간의 판결문이며,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성 간 성폭력에 주목하면서, 여성 간 성폭력이나 성소수자 간 성폭력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그 밖의 형태와 어떻게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그 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성폭력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라는 기표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안티페미니즘 세력의 언설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위치에 있는 성폭력‘들’을 읽어내어 성폭력 발생을 지속시키는 구조에 파열을 일으킬 사회적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6. 05. 19, 논문심사일: 2026. 06. 09, 게재확정일: 2026. 06. 19)

## 참고문헌

- 권인숙·김엘리·김현영·노미선·이경환·이동욱·홍미리. 2004.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보명. 2019.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 김보화·추지현·이미경. 2017.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피해자학연구』 25(2): 89-121.
- 김선희. 2019.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여성학논집』 36(1): 3-25.
- 김소라.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1): 163-199.
- 김애라. 2022.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한국여성학』 38(1): 1-36.
- 김학이. 2013. 『나치즘과 동성애: 독일의 동성애 담론과 문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 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 서동광·하정희. 2020.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89-116.
- 서유정. 2023.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사업장의 성희롱 사건 인식 및 대응수준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 34(3): 41-68.
- 송승연. 2025. “‘여성간 성폭력’ 피해경험 인식 과정과 사회적 비가시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수전 브라운밀러. 2018[1975].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박소영 옮김. 파주: 오일외봄.
- 신상숙. 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2): 1-45.
- 안지희. 2026. “강간죄 폭행협박요건 최협의설의 문제점 및 관련판례 동향.”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자료집.

- 양현아. 2005.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46(2): 198-237.
- 오봉욱. 2014. “교정시설 수용자간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동성애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4: 109-131.
- 윤지영. 2020.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형사판례연구』 28: 183-218.
- 이미정·정수연·권인숙. 2016.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정수연·양혜린. 2017.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지현·박설희. 2025. “‘피해자-되기’의 어려움: 성매매처벌법 판례 분석.” 『여성연구』 124: 149-180.
- 장다혜. 2018.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37-86.
- 조애나 버크. 2023[2022]. 『수치: 방대하지만 단일하지 않은 성폭력의 역사』. 송은주 옮김. 파주: 디플롯.
- 추지현. 2013. “‘강간’과 ‘계간’ 사이: 균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 『한국여성학』 29(3): 147-180.
- 추지현. 2024.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을 보호하라: 균형법 추행죄의 위태로운 존속과 강제적 이성애.”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기획.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남성성, 젠더, 퀴어, 동물, AI』. 파주: 서해문집.
- 허민숙. 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30.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피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 황정임·주재선·김정혜·동제연·최란·권하늬·장은혜·유준오·백해민. 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R. W. 코넬. 2013[1995].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서울: 이매진.
- Blackburn, Allyson M., Benjamin W. Katz, Daniel W. Oesterle and Lindsay M. Orchowski. 2024.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Sexual

-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e Communities: A Call to Ac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5(1): 2297544.
- Boyle, Karen. 2019. “What’s in a Name? Theorising the Inter-relationships of Gender and Violence.” *Feminist Theory* 20(1): 19-36.
- Cahill, Ann J. 2009. “Sexual Violence and Objectification.” In: Renée J. Heberle and Victoria Grace (Eds.). *Theorizing Sexual Violence*. New York, NY: Routledge.
- Chesney-Lind, Meda. 2006. “Patriarchy, Crime and Justice: Feminist Criminology in an Era of Backlash.” *Feminist Criminology* 1(1): 6-26.
- Gaspar, Mark, Shayna Skakoon-Sparling, Barry D. Adam, David J. Brennan, Nathan J. Lachowsky, Joseph Cox, David Moore, Trevor A. Hart and Daniel Grace. 2021. ““You’re Gay, It’s Just What Happens”: Sexual Minority Men Recounting Experiences of Unwanted Sex in the Era of MeToo.”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8(9): 1205-1204.
- Kelly, Liz. 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In: Jalna Hanmer and Mary Maynard (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 Maher, Lisa. 1997.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Oxford: Clarendon.
- Marchia, Joseph and Jamie M. Sommer. 2019. “(Re)defining Heteronormativity.” *Sexualities* 22(3): 267-295.
- New York City Gay & Lesbian Anti-Violence Project. 2003.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Domestic Violence in 2002: A Report of the National Coalition of Anti-Violence Programs*. New York, NY: Authors.
- Ovesen, Nicole and Caitlin Carroll. 2025. “Sexual Violence in Lesbian and Queer Relationships - Double Invisibility.” *NORA - 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33(3): 329-341.
- Park, Joohyun. 2024. “Injured and Ashamed: The Limitation of the Expanded Cocercion-Based Rape Model in South Korea.” *Gender & Society* 38(3): 408-435.

- Rich, Adrienne. 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5(4): 631-660.
- Sedgwick, Eve K. 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oares, Emily E., Kimberley T. Jackson, Tara Mantler and Abe Oudshoorn. 2023. "Women's Experience of Obtain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llow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Relationships in Rural Communities." *Sexual and Gender Diversity in Social Services* 36(2): 208-230.
- 연합뉴스. 2025.9.30. "여가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성평등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096251530> (최종접속일 2026년 6월 16일).
- 한겨레. 2025.10.14. "이 대통령 "특정 영역 남성 역차별" 3번째 언급...첫발똥 성평등부 '곤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337](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337) (최종접속일 2026년 6월 16일).
- 파이낸셜뉴스. 2018.12.6. ""여성만을 위해?"..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역차별 논란." <https://www.fnnews.com/news/201812052332400889> (최종접속일 2026년 6월 16일).

<Abstract>

**Androcentric and Heteronormative Judgments on  
Sexual Violence:  
An Analysis of Judgments on Male-on-Male Sexual Violence**

Shin, Seungho\*

This study examines the court's understanding of sexual violence manifested in male-on-male sexual violence cases to analyze how gender operates in men's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milar to male-on-female sexual violence, "obscenity" tended to serv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victimization. Second, in cases of 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recognition of coercion and the absence of suspicion of false accusation were notably more pronounced compared to cases involving female victims. Third, the court's judgment of sexual violence was grounded in the norm that only heterosexual relations are natural; consequently, when the defendant was homosexual, a pronounced tendency to reduce sexual violence to a matter of excessive sexual desire emerged. This perspective of the court in interpreting and recognizing male-on-male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exposes the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androcentric and heteronormative gender relations when compared to male-on-female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Keywords: Male-on-Male Sexual Violence, Court Decision Analysis, Obscenity, Victimhood, Homosexuality

---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